



부족 기술군 단기 비자(서브 클래스 482) 혹은 임시 근로 (기술) 비자(서브클래스 457)

코로나 19 테스트와 치료

무비자 상태이거나 비자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중 보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.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, 의사의 진찰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세요.

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코로나 19 테스트와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[호주의 수도](#)
- [뉴 사우스 웨일즈](#)
- [노던 테리토리](#)
- [퀸즐랜드](#)
- [남 호주](#)
- [타스마니아](#)
- [빅토리아](#)
- [서 호주](#)

부족 기술군 단기 비자(서브 클래스 482) 혹은 임시 근로 (기술) 비자(서브클래스 457) 소지자

코로나 19로 인해 일을 물러나 있지만 해고되지 않은 임시 부족 기술군 및 서브클래스 457 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고용주에게는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통해 비자를 연장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

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회사가 고용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사업체들이 본 비자 소지자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.

실직했을 때의 옵션

만일 해고되어 현재 실직 상태라면, 60 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거나 호주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호주 정부의 보건에 관련한 조언을 준수해야 합니다.

현재 보건, 노인 및 장애인 요양, 아동 보육, 농업 또는 식품 가공 등의 코로나 19 관련 중요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는 [임시 활동 비자 \(서브클래스 408\) 호주 정부 승인 협정 \(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Agreement Event\)](#) [관련 비자](#) [코로나 19 팬데믹 비자](#) 자격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비자 소지자가 재정난을 겪는 경우

일을 물러나 있지만 해고되지 않았는데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9-20 회계연도 동안에 최대 1만 달러의 호주 퇴직 연금을 비과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[호주 국세청, 퇴직 연금 조기 수령](#)을 참조하세요.

코로나 19 팬데믹 비자

임시비자가 거의 만료된 상태이고 중요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여행 제재 조치로 인해 귀국할 수 없고 다른 비자 요구 조건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라도 코로나 19 팬데믹 비자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에는 다른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추가 비자 신청비(VAC)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등의 진술과 증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.